김해시 안동1지구 2B-2L(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입주자모집공고문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모델하우스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견본주택 방문 예약제 운영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 할 예정입니다.(https://www.prugio.com/house/2020/gimhae/)

- 모델하우스 방문관람은 당사가 정한 일정과 시간대별 방문 예약자에 한하여 관람이 가능하며, 접수방법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델하우스 방문예약은 1팀(2명 이하) 기준 시간당 100팀에 한하여 예약방문이 가능하며, 신청자가 초과하는 경우 요일별 중복신청은 금지합니다.
-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예당포함) 시 방문시간 예약은 별도로 안내 할 예정이며, 당첨자(계약자)의 방문 일정을 사전에 접수 할 수 있습니다.

※ 모델하우스 방문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입장 전, 관람 또는 상담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열 화상카메라를 통한 체온이 37.3도 이상일 경우(당 모델하우스 입구 설치 열화상카메라 기준).
- 입장 시 손소독제, 감염 확산 예방 조치(소독수 분사 등)에 불응할 경우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 할 예정입니다.

■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는 코로나19확산 방지에 따라 모델하우스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제한시 고객 상담을 분양 상담전화(1899-9053) 등을 통해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님의 문의 집중 등으로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상담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청약 신청 자격 상황 등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을 숙지하시고 관련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한국감정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의 청약자격사전관리 및 청약가상체험을 통하여 착오 신청 등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전문

■ 본 아파트는 202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7.10.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해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85㎡이하 주택은 2016.08.1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2항에 의거 가점제 40%가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10.)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 신청자격(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 건설지역인 김해시 1년이상(2019.07.10.이전부터 계속)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거하여, 본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김해시에 1년 이상 거주(2019.07.10. 이전부터 계속)한 청약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김해시 1년 미만 거주 청약자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김해시 제외, 이하 경상남도) 거주 청약자는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김해시 1년 미만 거주 청약자는 1순위 기타 지역으로 청약 접수 하여야함.)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3개월 미만의 단순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6개월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1.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10.**)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10.)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10.)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10.**)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10.**)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ouse/2020/gimhae/index_w.aspx)**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 대전,광주,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2020.04.17.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정	2020.07.21.(화)	2020.07.22.(수)	2020.07.23.(목)	2020.07.29.(수)	2020.08.10.(월) ~ 2020.08.12.(수) (10:00 ~ 16:00)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 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견본주택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김해시 공동주택과 - 26230호(2020.07.0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남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2블록 2로트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38~47층 7개동 총 1,400세대

[특별공급 591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137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137대, 신혼부부특별공급 278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39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3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계		
민영 주택	2020000851	01	059.7668A	59A	59.7668	25.2985	85.0653	40.3117	125.3770	21.2955	297	29	29	59	8	125	172	6
		02	059.9934B	59B	59.9934	25.2122	85.2056	40.4644	125.6700	21.3762	126	12	12	25	3	52	74	3
		03	059.9682C	59C	59.9682	26.9679	86.9361	40.4474	127.3835	21.3672	224	22	22	44	6	94	130	5
		04	074.8890	74	74.8890	31.2851	106.1741	50.5111	156.6852	26.6837	347	34	34	69	10	147	200	8
		05	084.9908	84	84.9908	34.5349	119.5257	57.3247	176.8504	30.2830	406	40	40	81	12	173	233	9
	합 계										1,400	137	137	278	39	591	809	31

·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적 환산 시 소수점 4자리에서 단수 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산정하였으며,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주택형 구분은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 사무소, 주민공동 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대지지분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계약 시 면적이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타입	공급 세대수	동별 라인별	층 구분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 (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1차 (10%)	2차 (10%)	3차 (10%)	4차 (10%)	5차 (10%)	6차 (10%)	입주지정기간
								계약시	계약 후 1개월 이내	('21.01.11)	('21.06.11)	('21.11.11)	('22.04.11)	('22.08.11)	('23.01.11)	
59.7668A	297	103동4 105동3,4 106동4,5	2층	5	55,880,000	198,120,000	254,000,000	10,000,000	15,400,000	25,400,000	25,400,000	25,400,000	25,400,000	25,400,000	25,400,000	76,200,000
			3층~4층	10	57,200,000	202,800,000	260,000,000	10,000,000	16,000,000	26,000,000	26,000,000	26,000,000	26,000,000	26,000,000	26,000,000	78,000,000
			5층~9층	25	58,960,000	209,040,000	268,000,000	10,000,000	16,800,000	26,800,000	26,800,000	26,800,000	26,800,000	26,800,000	26,800,000	80,400,000
			10층~19층	50	60,280,000	213,720,000	274,000,000	10,000,000	17,400,000	27,400,000	27,400,000	27,400,000	27,400,000	27,400,000	27,400,000	82,200,000
		전라인	20층~47층	171	61,380,000	217,620,000	279,000,000	10,000,000	17,9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83,700,000
		104동2 105동1	2층	2	54,340,000	192,660,000	247,000,000	10,000,000	14,700,000	24,700,000	24,700,000	24,700,000	24,700,000	24,700,000	24,700,000	74,100,000
			3층~4층	4	55,440,000	196,560,000	252,000,000	10,000,000	15,200,000	25,200,000	25,200,000	25,200,000	25,200,000	25,200,000	25,200,000	75,600,000
			5층~9층	10	57,200,000	202,800,000	260,000,000	10,000,000	16,000,000	26,000,000	26,000,000	26,000,000	26,000,000	26,000,000	26,000,000	78,000,000
			10층~19층	20	58,300,000	206,700,000	265,000,000	10,000,000	16,500,000	26,500,000	26,500,000	26,500,000	26,500,000	26,500,000	26,500,000	79,500,000
59.9934B	126	103동1	2층	1	55,440,000	196,560,000	252,000,000	10,000,000	15,200,000	25,200,000	25,200,000	25,200,000	25,200,000	25,200,000	25,200,000	75,600,000
			3층~4층	2	56,540,000	200,460,000	257,000,000	10,000,000	15,700,000	25,700,000	25,700,000	25,700,000	25,700,000	25,700,000	25,700,000	77,100,000
			5층~9층	5	58,300,000	206,700,000	265,000,000	10,000,000	16,500,000	26,500,000	26,500,000	26,500,000	26,500,000	26,500,000	26,500,000	79,500,000
			10층~19층	10	59,620,000	211,380,000	271,000,000	10,000,000	1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81,300,000
		103동1 106동1	20층~47층	44	60,720,000	215,280,000	276,000,000	10,000,000	17,600,000	27,600,000	27,600,000	27,600,000	27,600,000	27,600,000	27,600,000	82,800,000
		102동1 106동1	2층	2	53,680,000	190,320,000	244,000,000	10,000,000	14,400,000	24,400,000	24,400,000	24,400,000	24,400,000	24,400,000	24,400,000	73,200,000
			3층~4층	4	54,780,000	194,220,000	249,000,000	10,000,000	14,900,000	24,900,000	24,900,000	24,900,000	24,900,000	24,900,000	24,900,000	74,700,000
			5층~9층	10	56,540,000	200,460,000	257,000,000	10,000,000	15,700,000	25,700,000	25,700,000	25,700,000	25,700,000	25,700,000	25,700,000	77,100,000
			10층~19층	20	57,860,000	205,140,000	263,000,000	10,000,000	16,300,000	26,300,000	26,300,000	26,300,000	26,300,000	26,300,000	26,300,000	78,900,000
		102동1	20층~47층	28	58,960,000	209,040,000	268,000,000	10,000,000	16,800,000	26,800,000	26,800,000	26,800,000	26,800,000	26,800,000	26,800,000	80,400,000
59.9682C	224	101동4 102동3 103동3 106동3	2층	4	55,660,000	197,340,000	253,000,000	10,000,000	15,300,000	25,300,000	25,300,000	25,300,000	25,300,000	25,300,000	25,300,000	75,900,000
			3~4층	8	56,980,000	202,020,000	259,000,000	10,000,000	15,9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77,700,000
			5~9층	20	58,740,000	208,260,000	267,000,000	10,000,000	16,700,000	26,700,000	26,700,000	26,700,000	26,700,000	26,700,000	26,700,000	80,100,000
			10~19층	40	59,840,000	212,160,000	272,000,000	10,000,000	17,200,000	27,200,000	27,200,000	27,200,000	27,200,000	27,200,000	27,200,000	81,600,000
		전 라인	20~47층	134	61,160,000	216,840,000	278,000,000	10,000,000	17,800,000	27,800,000	27,800,000	27,800,000	27,800,000	27,800,000	27,800,000	83,400,000
		105동2	2층	1	53,900,000	191,100,000	245,000,000	10,000,000	14,500,000	24,500,000	24,500,000	24,500,000	24,500,000	24,500,000	24,500,000	73,500,000
			3~4층	2	55,220,000	195,780,000	251,000,000	10,000,000	15,100,000	25,100,000	25,100,000	25,100,000	25,100,000	25,100,000	25,100,000	75,300,000
			5~9층	5	56,980,000	202,020,000	259,000,000	10,000,000	15,9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25,900,000	77,700,000
			10~19층	10	58,080,000	205,920,000	264,000,000	10,000,000	16,400,000	26,400,000	26,400,000	26,400,000	26,400,000	26,400,000	26,400,000	79,200,000

타입	공급 세대수	동별 라인별	층 구분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 (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1차 (10%)	2차 (10%)	3차 (10%)	4차 (10%)	5차 (10%)	6차 (10%)	입주지정기간
								계약시	계약 후 1개월 이내	('21.01.11)	('21.06.11)	('21.11.11)	('22.04.11)	('22.08.11)	('23.01.11)	
74.8890	347	102동2 103동2 105동5 107동4	2층	4	68,640,000	243,360,000	312,000,000	10,000,000	21,200,000	31,200,000	31,200,000	31,200,000	31,200,000	31,200,000	31,200,000	93,600,000
			3~4층	8	70,180,000	248,820,000	319,000,000	10,000,000	21,900,000	31,900,000	31,900,000	31,900,000	31,900,000	31,900,000	31,900,000	95,700,000
			5~9층	20	72,380,000	256,620,000	329,000,000	10,000,000	22,900,000	32,900,000	32,900,000	32,900,000	32,900,000	32,900,000	32,900,000	98,700,000
			10~19층	40	73,920,000	262,080,000	336,000,000	10,000,000	2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100,800,000
		102동2 103동2 104동1 105동5 106동2 107동4	20~47층	155	75,240,000	266,760,000	342,000,000	10,000,000	24,200,000	34,200,000	34,200,000	34,200,000	34,200,000	34,200,000	34,200,000	102,600,000
		104동1 106동2	2층	2	66,660,000	236,340,000	303,000,000	10,000,000	2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90,900,000
			3~4층	4	67,980,000	241,020,000	309,000,000	10,000,000	20,900,000	30,900,000	30,900,000	30,900,000	30,900,000	30,900,000	30,900,000	92,700,000
			5~9층	10	70,180,000	248,820,000	319,000,000	10,000,000	21,900,000	31,900,000	31,900,000	31,900,000	31,900,000	31,900,000	31,900,000	95,700,000
			10~19층	20	71,720,000	254,280,000	326,000,000	10,000,000	22,600,000	32,600,000	32,600,000	32,600,000	32,600,000	32,600,000	32,600,000	97,800,000
		101동1 102동6	2층	2	66,660,000	236,340,000	303,000,000	10,000,000	2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90,900,000
			3층~4층	4	67,980,000	241,020,000	309,000,000	10,000,000	20,900,000	30,900,000	30,900,000	30,900,000	30,900,000	30,900,000	30,900,000	92,700,000
			5층~9층	10	70,180,000	248,820,000	319,000,000	10,000,000	21,900,000	31,900,000	31,900,000	31,900,000	31,900,000	31,900,000	31,900,000	95,700,000
			10층~19층	20	71,720,000	254,280,000	326,000,000	10,000,000	22,600,000	32,600,000	32,600,000	32,600,000	32,600,000	32,600,000	32,600,000	97,800,000
			20층~43층	48	73,040,000	258,960,000	332,000,000	10,000,000	23,200,000	33,200,000	33,200,000	33,200,000	33,200,000	33,200,000	33,200,000	99,600,000
84.9908	406	전라인	2층	9	77,220,000	273,780,000	351,000,000	10,000,000	25,100,000	35,100,000	35,100,000	35,100,000	35,100,000	35,100,000	35,100,000	105,300,000
			3~4층	18	78,760,000	279,240,000	358,000,000	10,000,000	2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107,400,000
			5~9층	45	81,180,000	287,820,000	369,000,000	10,000,000	2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110,700,000
			10~19층	90	82,940,000	294,060,000	377,000,000	10,000,000	2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113,100,000
			20~47층	244	84,480,000	299,520,000	384,000,000	10,000,000	2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115,200,000

▶ 주택형 표시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59.7668A	59.9934B	59.9682C	74.8890	84.9908
약식표기	59A	59B	59C	74	84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에는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전용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복도,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분양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합니다.(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추가 선택품목은 추후 공지예정으로 계약자가 별도 신청을 통해 계약 가능합니다.
·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이 없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단,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1차 계약금 및 2차 계약금 포함) 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 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 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본 불가)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 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 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조 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택가격(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 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중도금은 아파트의 경우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에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 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 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예금 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 등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59A	59B	59C	74	84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10	4	7	11	13	45
	국가보훈대상자		7	4	5	8	9	33
	장기복무 제대군인		3	1	3	3	4	14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3	1	3	5	6	18
	중소기업 근로자		6	2	4	7	8	27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29	12	22	34	40	137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45	19	33	52	61	210
		일반공급(25%)	14	6	11	17	20	68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8	3	6	10	12	39
합 계			125	52	94	147	173	591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 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 됩니다.(방문 접수시간 : 10:00 ~ 14:00)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10.)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10.**)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소형 ·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0.07.10.**)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동·호수 추첨은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순번을 부여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포함)는 당첨자 발표 시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사실조회"개별조회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예비입주자 공개기간(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경과 다음날 소멸됩니다.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www.applyhome.co.kr)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정보) 취약자에 한해 견본주택 방문 청약신청 접수를 하실 수 있음

• 인터넷청약(청약홈)의 경우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 앞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청약신청 접수(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 서류를 지참 하여야 함

• 방문청약신청 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5조, 제57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신청 시 신청인이 입력한 청약신청내역에 대하여 검증절차 없이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입주자(당첨자) 선정 후 정부 주택전산망, 주민등록 전산망 및 한국감정원 당첨자 명단관리 전산망에 의한 검색 결과 청약자격 착오 입력 등에 따라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 및 주택공급계약 의 취소는 물론 관련 청약 신청 제한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으니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청약 신청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시 청약자격 및 입주자선정기준 등은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청약제도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여야만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수 있습니다. 착오 신청에 따른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내용</th></tr>
<tr><td rowspan="3">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td><td>공급세대수</td><td>·「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 137세대</td></tr>
<tr><td>대상자</td><td>·「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0.07.10.)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td></tr>
<tr><td>청약자격요건
및
추천기관</td><td>· 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table>
<tr><th>일반특별공급 항목</th><th>추천기관</th><th>담당과</th></tr>
<tr><td>국가유공자</td><td rowspan="2">국가보훈처
부산지방,경남동부,경남서부,울산보훈지청</td><td rowspan="2">복지과</td></tr>
<tr><td>장기복무 제대군인</td></tr>
<tr><td>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td><td>국군복지단</td><td>복지사업운용과</td></tr>
<tr><td>중소기업 근로자</td><td>중소기업청 부산지방청, 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td><td>성장지원과</td></tr>
<tr><td>장애인</td><td>부산시청, 경남도청, 울산시청</td><td>장애인복지과</td></tr>
</table></td></tr>
<tr><td colspan="2">당첨자
선정방법</td><td>·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td></tr>
<tr><td rowspan="2">다자녀
특별공급</td><td>공급세대수</td><td>·「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의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 137세대</td></tr>
<tr><td>대상자</td><td>·「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td></tr>
</table>

<table>
<tr><td></td><td></td><td>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td></tr>
<tr><td></td><td>당첨자
선정방법</td><td>· 해당지역(김해시 1년이상 거주)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td></tr>
<tr><td></td><td>유의사항</td><td>·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자녀수에 임신 중에 있는 태아 또는 입양자녀를 포함할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등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음.
- 임신의 경우 :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 입양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임신(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하여야 함
· 다자녀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임신자격(출산 포함) 또는 입양자격이 유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자격이 유지 되고 있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 요청을 접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름</td></tr>
<tr><td></td><td>배점표</td><td>
<table>
<tr><th rowspan="2">평점요소</th><th rowspan="2">총배점</th><th colspan="2">배점기준</th><th rowspan="2">비고</th></tr>
<tr><th>기준</th><th>점수</th></tr>
<tr><td>계</td><td>100</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미성년 자녀수(1)</td><td rowspan="3">40</td><td>미성년 자녀 5명 이상</td><td>40</td><td rowspan="3">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td></tr>
<tr><td>미성년 자녀 4명</td><td>35</td></tr>
<tr><td>미성년 자녀 3명</td><td>30</td></tr>
<tr><td rowspan="3">영유아 자녀수(2)</td><td rowspan="3">15</td><td>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td><td>15</td><td rowspan="3">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td></tr>
<tr><td>자녀 중 영유아 2명</td><td>10</td></tr>
<tr><td>자녀 중 영유아 1명</td><td>5</td></tr>
<tr><td rowspan="2">세대구성(3)</td><td rowspan="2">5</td><td>3세대 이상</td><td>5</td><td>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td></tr>
<tr><td>한부모 가족</td><td>5</td><td>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td></tr>
<tr><td rowspan="3">무주택기간(4)</td><td rowspan="3">20</td><td>10년 이상</td><td>20</td><td rowspan="3">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td></tr>
<tr><td>5년 이상 ~ 10년 미만</td><td>15</td></tr>
<tr><td>1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r>
<tr><td rowspan="3">해당 시·도 거주기간(5)</td><td rowspan="3">15</td><td>10년 이상</td><td>15</td><td rowspan="3">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td></tr>
<tr><td>5년 이상 ~ 10년 미만</td><td>10</td></tr>
<tr><td>1년 이상 ~ 5년 미만</td><td>5</td></tr>
<tr><td>입주자저축가입기간(6)</td><td>5</td><td>10년 이상</td><td>5</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d></td><td></td><td>(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td></tr>
<tr><td rowspan="3">신혼부부
특별공급</td><td>공급세대수</td><td>·「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의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이내 : 278세대</td></tr>
<tr><td>대상자</td><td>·「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한다.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김해시 1년이상 거주)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td></tr>
</table>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554,984원 ~ 6,665,980원	6,226,343원 ~ 7,471,610원	6,938,355원 ~ 8,326,025원	7,594,084원 ~ 9,112,900원	8,249,813원 ~ 9,899,774원	8,905,542원 ~ 10,686,649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665,981원 ~ 7,221,478원	7,471,611원 ~ 8,094,245원	8,326,026원 ~ 9,019,860원	9,112,901원 ~ 9,872,308원	9,899,775원 ~ 10,724,756원	10,686,650원 ~ 11,577,203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가구당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4호(제2의3호)

- 다음 각 목 세대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성년자의 합산 소득

가. 주택공급 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유의사항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신의 경우 :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 입양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임신(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하여야 함.

· 세대구성원 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

· 재혼일 경우 세대원 전부가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세대에 한하여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 함.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임신자격(출산 포함) 또는 입양자격이 유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자격이 유지 되고 있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 요청을 접수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간이 공급신청자 앞으로 등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자의 경우에는 계 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 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름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의거 공급 세대수의 3% 이내 : 39세대**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함.**(김해시 1년이상 거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유의사항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3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자격 (공통)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중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 의거, 김해시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시 김해시 1년 미만 거주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1순위 및 2순위 모두 적용하여 유주택자도 청약신청 가능]
순위별 자격 요건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자
당첨자 및 동·호수 결정방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결정.
유의사항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 나이는 만 나이 를 기준으로 함.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 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의거, 청약통장 가입조건에 따른 1순위자 중 1가구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공급신청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도 전용면적 85㎡이하, 1순위 청약이 가능.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1항에 의거,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람.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이 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공급신청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람.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중복 청약접수 관련(이중당첨)
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을 신청할 경우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대하여 중복 청약은 가능하나, 서로 다른 주택 모두에 당첨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본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로 재사용할 수 없으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에 의거,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가 소명기간 내(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의 경우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6개월(단,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의 경우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 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을 신청할 경우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관련 기준사항

구 분	충족(변경) 기한 및 사항		비 고
	기 한	사 항	
청약예금 증액 (전용면적 : 작은 면적→ 큰 면적 변경)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① 가입기간 경과 ②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	
청약부금 예치금 충족(85㎡ 이하)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① 가입기간 경과 ②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	85㎡ 초과 주택 청약 불가
청약부금 ⇒ 청약예금으로 전환 (85㎡ 초과)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① 가입기간 경과 ②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	
청약저축 ⇒ 청약예금으로 전환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① 가입기간 경과 ②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① 가입기간 경과 ②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	

• 층별, 동별, 호별, 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및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하고,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하여 차순위 청약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2순위까지 청약 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공급신청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전용면적 85㎡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공급
전용면적 85㎡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2항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가점제를 적용하여 선정하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 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 청약자격 전산수록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 등의 신청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 신청일 이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 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표등본 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인터넷 또는 은행에서는 공급신청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 접수를 받으므로 공급신청 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은 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 신청 이후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청약 가상체험관"에서 제공하는"청약가이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신청구분	공급방법	신청자격	거주구분
민영주택	1순위	전용85㎡ 이하	가점제40% 추첨제60%	• 가점제 40%, 추첨제 6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해당 주택형에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공급신청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추첨제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 1년이상 거주신청자가 김해시1년 미만 거주,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김해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2순위	전주택형	추첨제100%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 주택소유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 비속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 산정점수 배제)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관련 [별표2])

거주지역	김해시 또는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비고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거주지역 예치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청약 가능

※ 상기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변경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① 무주택 기간 산정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 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20.0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이상 ~ 9년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20	
		1년이상 ~ 2년미만	4	10년이상 ~ 11년미만	22	
		2년이상 ~ 3년미만	6	11년이상 ~ 12년미만	24	
		3년이상 ~ 4년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이상	32	
		7년이상 ~ 8년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 53조 제 6호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외 세대원이 1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1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소유 시 부양가족수 미포함하여 산정함.(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 제외)

4 청약신청 일정 , 장소 및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20.07.21(화) (청약홈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노약자.장애인등 인터넷 청약불가자에 한해 견본주택에서 가능함.	•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노약자.장애인등 인터넷 청약불가자에 한함)
일반공급	1순위	2020.07.22(수)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2순위	2020.07.23(목) 08:00~17:30		

※ 스마트폰앱 :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에서"청약홈" 검색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홈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 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O		특별공급신청서/확약서/무주택서약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인터넷청약(apply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ply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 인터넷청약(apply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본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주택공급 신청용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이 안될 경우 제출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비속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단독세대 및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직계비속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출입국사실 증명원	본인 세대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 · 청약신청시 세대원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O	복무확인서	본인 (장기복무군인)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10년 이상 장기 복무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봄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O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증서	본인	· 기관추천 명단 리스트에 명단이 확인되지 않을때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이혼 및 재혼 가정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인 경우
		O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임신진단서, 출산이행각서는 견본주택 비치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19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주민등록표 등본	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직계비속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 성원 전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O		소득증빙 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 [소득증빙서류 참조]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O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중인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O	비사업자 확인 각서	본인 및 해당자	·견본주택에 비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O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생략
	O		신분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1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세대주 성명 및 관계","주소변동이력 및 일자"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세대주 성명 및 관계" , "주소변동이력 및 일자"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입증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산정용 내역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 접수장소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1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함.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플레이스토어 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최하층 주택우선배정 신청**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에 한함)

- 금회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1층) 주택 공급 세대수는 주택형별 층별 공급세대수를 참조하시기 바람.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1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1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주택형의 경우 공급주택 중 최하층을 말함.

구분	최하층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 청약신청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신청자 중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만65세 이상인 자 ②「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세대에 속한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 경쟁 시 ①,②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배정
신청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 :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로 정해진 신청일자에 인터넷 청약하여 신청하고, 자격입증서류 및 최하층(1층)주택 우선배정 신청서(별도양식)를 제출해야 함. • 일반공급 신청자 : 희망자는 인터넷청약 시 최하층(1층) 우선배정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자격입증 서류 및 최하층(1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서(별도 양식)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자격입증서류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5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 일시: 2020.07.29.(수.) • 확인방법 - 한국감정원(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당첨일로부터 10일간)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0.08.10.(월)~2020.08.12.(수)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장소 : 경남 김해시 안동 360-32번지)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한국감정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 잔여 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 • 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지정 계약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후 무통장 입금 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 계약 당일에 계약금(현금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함.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0.07.29(수) ~ 2020.08.07.(목) (10일간)
인터넷		-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0.07.29(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전화(ARS)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추첨제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 1년 이상 거주자가 김해시 1년미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Apply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Apply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 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 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 제1호 가목 2)

· 전용면적 60 ㎡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0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6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서류 제출 및 심사 기한	• 2020.08.01.(토)부터 ~ 2020.08.09.(일) 17:00까지
대상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1,2순위) 당첨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전원
제출처	• 당사 견본주택 : 경남 김해시 안동 360-32 / 1899-9053
유의사항	•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주택의 공급계약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에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전 당첨 자 서류 제출기한 내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아래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특별공급 인터넷 신청으로 당첨되신 분의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신청자격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심사를 통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유의사항

- 당첨자 별로 자격확인서류 및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봄)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자격확인 공통 제출서류(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O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약서	-	견본주택에 비치[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본인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본인발급용)
	O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공급 신청 시는 제출 생략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O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공급받으려는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만 30세 미만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부양가족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제외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복무확인서 및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특별공급	O		특별공급 확약서	-	견본주택에 비치[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	-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를 참조하여 제출[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를 참조하여 추가 제출]
일반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 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 18세 이상의 미혼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 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 경우에 한하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소명자료)		O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 제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주택소유에 관한 증명 서류
		O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제출시 추가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O		신분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제1호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제2호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7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로 1차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 분	계약 일정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0.08.10.(월) ~ 2020.08.12.(수), 3일간, 10:00 ~ 16:00	경남 김해시 안동 360-32 견본주택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
※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 시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부적격임을 통보한 일로부터 7일)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이후에라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제1호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제2호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당첨 및 계약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또한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없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타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됨.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함.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제출유형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필수 해당자
		필수	해당자		
본인계약시	계약금	○		본인	•분양계좌로 납부한 내역이 명기된 무통장입금증 또는 계좌이체영수증(현금 수납 불가)
	신분증	○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자격검증서류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추가 개별통지서류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인감증명서	○		본인	•용도에「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발급에 한함. 본인계약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인감도장	○		본인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부적격당첨 통보자	무주택소명 서류		○	본인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소형저가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서류
	당첨사실 소명서류		○	본인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등 사업주체가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제출)	인감증명서		○	본인	•용도에 「아파트계약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계약자 본인 발급
	위임장		○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함(대리접수 불가).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계약금 ,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본 계좌는 분양 대금 납부계좌로 향후 금융기관의 CMS 체결로 타행 입금 등이 제한될 수 있음.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1차 계약금 납부계좌	대구은행	504-10-389746-3	대한토지신탁 (주)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대구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예정	대한토지신탁 (주)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주택의 중도금대출은 무이자이며,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10% 미납시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함. 중도금 대출이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납부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중도금대출 담당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일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 중도금대출 담당 금융기관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며 제1금융권 지정이 불가할경우 제2금융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니 제2금융권 이용에 따른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되고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다실계약자,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름.

■ 부대 및 복리시설 :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GX룸, 사우나, 독서실, 취미실, 경로당, 어린이집, 북카페 등 주민공동시설 및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등

※ 부대 및 복리시설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상기 계획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규정에 의함

8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공사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발코니 확장 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59A, 59B, 59C	10,000,000	1,000,000	9,000,000	
74	12,000,000	1,200,000	10,800,000	
84	14,000,000	1,400,000	12,60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외부샤시(비확장 발코니 외부창호 포함), 확장형 주방가구, 확장 부위 가구 설치(형별 상이), 설치비용이 포함됩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는 별도로서 VAT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및 선택 옵션사항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입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 (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플러스옵션 선택품목(추가 옵션)

• 시스템 에어컨 옵션 금액

주택형	제조사	옵션선택	설치대수(실내기)	에어컨 설치 위치	금 액		비고
					일반형	공기청정형	
59A,59B,59C	삼성전자	기본	2	거실+침실1	2,800,000	3,400,000	
		전체	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5,400,000	6,600,000	
74	삼성전자	기본	2	거실+침실1	3,000,000	3,600,000	
		전체	4	거실+침실1+침실2+침실3	5,600,000	6,800,000	
84	삼성전자	기본	3	거실+주방+침실1	4,400,000	5,300,000	
		전체	5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6,900,000	8,400,000	

• 유상옵션 (시스템 에어컨) 설치 시 유의사항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으로 인해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 될 수 있음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삼성전자 제품으로 시공됨. 단,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타사 자재로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내기의 설치장소 변경 또는 일부제외가 불가 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음.(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계약 시 선택이 가능한 유상옵션이며 미확장시 선택이 불가합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 침실1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가 시공 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음.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IoT킷 추가시 별도 앱을 통하여 냉방제어(ON/OFF)가 가능함.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기본제공(2개소)인 거실과 침실1에는 냉매배관 및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음.

• 현관중문

(단위 : 원, VAT포함)

품 목 명	주택형	판매가	비고
현관중문	전타입	2,100,000	

· 현관중문 미선택 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중문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서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 할 수 없습니다.
· 현관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 차단의 목적에 한합니다.

• 거실 / 주방 마감재

(단위 : 원, VAT포함)

타입	거실/주방 바닥타일		
	59A,59B,59C	74	84
판매가	470,000	550,000	770,000

· 타일 마감재 선택 시 명기된 부위 외에는 기본형 강마루가 시공되며 정확한 적용부위는 C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타일 마감재 선택 시 평면옵션 선택에 따라 적용부위가 변경됩니다. 정확한 적용부위는 C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벽 마감재

(단위 : 원, VAT포함)

타입	엔지니어드스톤		
	59A,59B,59C	74	84
판매가	1,200,000	1,200,000	1,300,000

· 재료의 물성에 따라 재료 간 이음매가 발생됩니다.

• 드레스룸 특화

(단위 : 원, VAT포함)

품 목 명	주택형	판매가	비고
침실1 드레스룸 특화	74, 84	1,300,000	
침실3 드레스룸 특화	59C	3,500,000	유리슬라이딩도어 포함

• **가전기기**

(단위 : 원, VAT포함)

품 목 명	주택형	제조사 및 모델명	판매가	비고
드레스룸 천정형 제습기	84	코스텔 CDD-600B	590,000	천정형 제습기
빌트인 신발장청소기	전 주택형	그렉스 DSC-300	220,000	에어브러시
빌트인 김치냉장고	74, 84	삼성전자 RQ22K5L(R)01EC	1,300,000	220Lit급
전기오븐	전 주택형	sk매직 EON-B450M	420,000	일반형
		sk매직 EON-B401SA	650,000	고급형
하이브리드쿡탑	전 주택형	SK매직 GRA-BH301H	590,000	하이라이트2구 +가스1구
		SK매직 GRA-BI300H	820,000	인덕션2구 + 가스1구
식기세척기	전 주택형	SK매직 DWA-7505B	620,000	일반형
		SK매직 DWA-80U5B	910,000	고급형

• **옵션관련 유의사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와 제4조의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상기 별도 계약 품목은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해당 공사의 착수 이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 함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임)

· 별도 계약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음 (옵션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별도 계약품목의 계약이 불가함 (단, 계약 체결 가능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상기 유상 옵션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취득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상기 유상 옵션공사비(부가세포함)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 임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빌트인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김치냉장고 등 옵션 미선택시 수납 가구장이 설치됨

· 하이브리드쿡탑 옵션 미선택시 3구형 가스쿡탑이 설치됨

· 드레스룸 천정형 제습기는 무선리모콘으로 동작하며, 사용시 작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빌트인 신발장 청소기 사용시 필터, 먼지 봉투 교체등 소모품 발생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옵션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별도 계약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당사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옵션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선택품목 납부계좌, 납부 방법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납부계좌	대구은행	504-10-389748-7	대한토지신탁(주)
잔금 납부계좌	대구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예정	대한토지신탁(주)

※ 상기 계좌는 전체 옵션대금 관리계좌로서, 세대별 옵션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시 별도 생성되어 계약서에 고지될 예정이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입금시 유의 사항 : 추가 선택품목 입금시 해당 동, 호, 성명순으로 입금 바랍니다. (예: 101동 1201호 홍길동 → '1011201홍길동'으로 입금)

■ 발코니 확장 시 유의사항

·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기간 동안 발코니확장 옵션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 임.

·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 공사비 공급금액은 확장으로 인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 임.
· 발코니 확장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품질(타사제품 포함)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다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하며 계약자의 개별시공은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후 가능함.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또는 업체선정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창호는 향후 개폐방향, 제조사,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동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상하부세대의 확장으로 인하여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바닥과 천정에 단열재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발코니 비확장 시 창호 및 각종 가구류(주방가구, 일반가구, 선반가구 등) 및 확장 시 제공품목 등 구성이 확장 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카다로그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람.
· 비확장 세대는 각 발코니별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아니함.(발코니 수전이 설치된 곳에는 바닥배수구가 설치 됨)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깊이 및 천장고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허용오차 내)
· 발코니 확장 시와 비확장 시 발코니 바닥단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람.
· 발코니 확장형 평면에서 비 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창호가 설치되지 않으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의 설계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정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음.
· 다용도실 또는 실외기실 공간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며, 설치에 따른 배관노출, 건축입면 및 내부마감(창호, 외부그릴, 전등 사이즈 및 위치)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시 선택형(유상, 무상)이 불가한 품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통합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통합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주택형별 아래 선택사항은 발코니 확장시 적용이 가능함.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기준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음.

9 입주예정일 및 관련절차

■ 입주자 사전방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 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 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23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 추후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 공사 중 천재지변 ,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아니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어 입주예정자가 직접 납부하여야함.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재산세 등)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10 유의사항

※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통사항

• 일반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도시개발사업구역내 위치하고 있어, 도시개발사업내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대지권등기는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및 대지의 지적정리가 가능한 시점에 실시되므로 입주시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고,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후에도 대지권등기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반드시 이점 인지하시어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은 2020년 04월 사업계획변경승인 기준 도면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각종 홍보물상의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셔야하며, 계약 이후 단지 주변 현황(인접 APT단지, 인접 주택단지(상가주택 포함), 주변 상가, 공공청사(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종교시설(교회 등), 학교, 공원, 지하철역, 단지 외부도로 등)에 의한 사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동1구역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그에 따른 구역 내·외부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관할청의 인·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내용으로 사업 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 사업지의 북측 부지 및 남서방향에 안동공단이 조성되어 있음으로(일반 공업지역으로 연접), 악취 및 소음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차로는 직각주차와 접해있는 차로의 법규기준이 6m 이상이며, 우리 사업의 지하주차장 차로폭은 6~7m이며, 주차장 출입구 높이의 법규 기준은 우리 사업의 인허가 시점 기준으로 2.7m이며, 우리 사업은 해당 법규기준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본 사업이 준공이 되기 전 토지의 용도 등 조성계획 전반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 북측의 10m소로(도로)계획은 단지의 준공과는 무관하며, 입주시 개설이 되지 않습니다.
·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활천초등학교이며, 중학교는 현재 13학교군(신어중, 활천중, 삼정중 등)에 배정 예정이며, 중학교 입학은 동일학군 내 선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중학교 학교군은 매년 설정, 고시되므로 향후 학생배치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관청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계획은 관련 인·허가 관청 주관사항으로 시공자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사전환경성 검토, 교통영향 평가 등)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탑상형과 판상형이 혼합되어 있으며, 주동 배치계획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에 따라 분양 받을 주택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동 및 층, 향, 세대에 따라 일조 및 조망, 채광, 통풍 조건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표 시, 외부색채와 그래픽은 해당 관청과 협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단지홍보사인물,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으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설계변경에 따른 담장 및 부속시설 등 공용부분의 위치, 시설배치 면적과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의 설계사항은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외관디자인 및 색채계획, 미술장식품계획, 조경계획, 야간경관계획 등은 분양이후에 해당 관청(사업승인권자) 협의를 통하여 디자인 보완 및 계획 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시 제시된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본 공사 시 불합리한 설계의 개선 및 표현 오류, 오기의(공사)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재의 품귀 및 생산중단 등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기존 자재와 동급인 자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건립안과 설계도서가 상이한 점이 발생되는 경우 견본주택대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세대 및 기타 설계변경사항이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등 관련법령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설계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특기시방서에 별도의 시공기준이 없는 경우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시공계획서 또는 승인자재 제조사의 시공기준에 따릅니다.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인증표시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공인기관 승인된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발굽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성능시험을 통하여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품질 또는 성능을 확인 후 현장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의 경우, 입주 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성능저하에 대해서는 "수분양자(입주자)"가 유지 및 보수 관리하여야 합니다.
· 현장 상황에 따라 추후 단지명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공자"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견본주택에 전시되는 모형 및 이미지(조감도 등)상 표현된 단지명 및 BI는 실시공시 현장 상황에 따라 위치, 개소수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조명설계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야간에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견본주택에 전시되는 모형 및 이미지 상에 표현된 아파트 대지 주변 상황(옹벽, 도로, 철도, 근린공원, 주변건물 등), 개발계획 예정도, 단지인근 도로 완충 녹지 조감도, 단지모형 등은 실제와 다르거나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함으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일부는 준공 전 현장 사무실로 활용이 가능하며, 준공 후 A/S센터로 활용이 가능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의 위치 및 동, 층, 호수에 따라 코아 부분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의 주차대수와 주차구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한 단지의 개발 계획에 따라 대지 경계의 옹벽높이 및 단지 주출입구 주변의 동선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와 인접한 기반시설과(공공공지, 완충녹지, 학교용지 등)의 레벨차이로 조경석 쌓기 및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단지 주변 계획레벨보다 대지레벨이 낮아 일부동의 경우 저층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도로폭등의 제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후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경계펜스는 지역 규정, 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인허가 조건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분양 홍보물, 모형 등은 확장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비확장 시 세대 외부 난간은 철재로 시공됩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카탈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 단지 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의 레벨차이는 산벽 또는 옹벽으로 계획되어지며, 설치위치는 실시공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관청 지침에 따라 펜스 및 문주 등의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 거리, 조경 등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D/A, T/L(탑라이트) 상가, 기타 부대시설, 조경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변단지(공동주택 및 상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후 소음측정결과에 따라 소음저감시설(방음벽 또는 저소음포장 등) 설치로 인하여 저층세대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생활폐기물 보관소는 주동에 인접하여 설치되며, 배치 상 생활폐기물 보관소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소음, 분진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내 구조물 및 시설물, 식재의 훼손 우려로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하며,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분진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주민운동시설, 복리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경비실 등 주민공동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인접세대는 각 시설물의 에어컨(실외기), 설비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소 등으로 인한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 및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주변 도로, 통행로, 감해공항 인접 등으로 인해 소음(항공소음포함), 진동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위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공지 및 공공보행로 등은 외부인이 이용 및 통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자들의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접해있거나 단지주변에 있는 시설(철도, 도로, 공원, 보행로 등) 및 지형은 상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계획레벨(도로, 보행자전용도로등)에 따라 인접된 단지 시설등의 계획레벨, 길이, 형태, 종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외부도로와 면한 보행자 보도 구간은 대지지분에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부지 내에 set-back을 하여 도로 및 보도를 설치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24 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해당시설물의 유지관리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문주, 급배기시설(환기구 등), 정화조, 배기탑, 생활폐기물 보관소 등의 위치 및 크기, 형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한 일부세대는 조망, 일조의 일부제한 및 냄새 및 소음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소방서 협의 결과 비상차량동선 및 정차구간, 에어매트 설치구간 등 위치 및 규격이 변경될 수도 있으며, 에어매트 설치위치에는 수목식재는 배제되며, 소방서 점검시 사다리차 전개에 문제가 되는 경우 일부 수목에 대해선 상부 가지치기 또는 재배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소방법의 의거, 안전매트 설치구간에는 규정상 수목이 식재가 불가하여 일부 지피류가 식재될 예정이며, 추후 소방서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에 설치될 실외기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근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제한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필로티 내외부와 저층부 주변에 제연휀룸 환기창이 설치될 예정이며, 소방활동 및 점검시 작동되는 팬으로 인하여 소음, 환기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102,103동은 근린생활시설 인접에 따른 소음, 냄새 등이 발생하여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커뮤니티 시설 등의 외관 디자인 및 색채, 옥탑장식물, 경관조명 등은 설계 및 인·허가에 따라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옥상 구조물의 형태, 규격, 마감재종류는 실시설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및 석재뿜칠등으로 혼합 마감되고, 일부 상가시설 벽체는 페인트로 마감되어 각동별로 상이 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 될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 구조물은 모형, 조감도 등에 사용된 이미지와 모양, 개소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옥상 난간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공용부의 창호사양, 위치, 크기 변경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아파트 옥상구조물은 본 공사 시 형태변경 또는 구조물지지를 위한 수직부재 등이 추가 시공될 수 있으며 상부도장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실외기 그릴의 재질, 색상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면의 색채는 모형 및 CG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의 문주는 형태 및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동 출입구의 형태(평면 형태, 외관 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 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합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내 차량출입구는 아파트 입주민 및 근린생활시설 입주민 또는 사용자와 공용으로 사용되며, 주차장 구역은 별도 구획 되어 있지 않으나 주차장 내부에 상가용 주차장이 별도 표기 되어 있습니다.
· 지상층에서는 각 동 하부 필로티 또는 각 동 출입구를 통해 동별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보행자들로 인해 소음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V 운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 할 수 있고, 아파트 옥탑층 시설물(의장용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설치에 따른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으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의 설치유무 및 창호 크기, 또는 창 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의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고정창으로 시공되고, 환기를 위해서 설치하는 창호는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도록 설치되오니 이를 확인하시고 미확인

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산책로,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의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보관소의 악취,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의 위치와 배치계획상 각 동별로 지상, 지하 동선 거리가 상이하고, 또한 같은 이유로 부득이하게 각 동별로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홀까지의 거리가 상이하고, 주차대수가 고르게 분포되지 못하여 주차장이용에 불편 할 수 있으니 계약 시 해당 동의 계획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은 동별 주차 배분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각 동별 주차공간의 분포 및 위치에 따라 이용 시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세대는 개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커뮤니티의 내부구획 및 마감재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자는 단지 내 커뮤니티의 공간만 제공하고 내부 집기, 비품 및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자 과반수 이상 동의 시 입주 초기 Greenery Lounge(커뮤니티시설)을 조기 운영할 수 있으며, Greenery Lounge 조기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관리비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Greenery Lounge 조기 운영은 당 아파트 단지의 사정 및 여건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골프클럽, 작은도서관 등 부대시설 내 바닥레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탑 및 지하주차장 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시 해당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단자함/공용분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 일부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2동, 104동, 107동 옥탑에는 구내용 이동통신(기간사업자) 안테나 및 중계장치가 설치 될 예정이며 설치위치는 추후 전파조사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트렌치 시공시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렌치폭을 포함하며, 트렌치가 측면, 배면에 시공될 시에는 주차라인마킹은 하지 않습니다.
· 엘리베이터홀, 부대시설의 경량천장틀 시공부위에 천장틀의 처짐 등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 되지 않을 경우 마이너찬넬보강은 제외합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현장여건에 따라 PC + RC 복합공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해당 천장고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지하주차장 1층 차량통행 유효통과높이 : 2.7m, 지하주차장 2층,3층 차량통행 유효통과높이 2.3m)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 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휀룸,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우수조, 정화조 등 에 인접한 세대는 기계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 냄새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PS, TPS, AD/PD, PIT, ST, AV 등의 내부벽체 (조적벽, 콘크리트 벽)은 초벌미장 시공 제외하며 해당구간의 조적벽 미장은 엘리베이터홀 또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시공합니다.
· 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기계실 등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입주자들의 공용 공간이며, 이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및 사용비용은 각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공용조명등 & 통신시설물, 단지 홍보용 사인물, 놀이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공용부 환기설비, 공용부 동파방지 열선시설, 제습기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일부 동이 세대가 아닌 필로티 및 피트(PIT)공간 또는 부대시설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공간을 제외한 최저층을 저층우선 세대로 배정하였습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4조 5항에 의거,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홀, 지하층 통행로 등 공용부의 벽체타일 및 세대 아트월은 에폭시 떠붙임 공법으로 6~9지점 지지로 시공합니다.
· 발전기 배기구 근처에는 발전기 정기점검 및 비상시 가동으로 인한 매연이 인근세대로 유입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아파트 지붕에는 경관조명, 공청TV안테나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자는 준공 후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 후 최대 36개월)동안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시공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Ⅶ-0.239g 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건물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본 공사 시 아파트 및 부대시설, 각종 시설물 등의 디자인, 마감재는 경관/건축위원회심의 등 인허가 결과에 따라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내에 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배수 펌프가 설치되어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하수도요금 부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부대복리시설의 배수는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해 배수펌핑 후 메인배수관에 연결됩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합니다.

[단위세대 유의사항]

· 본 홍보물 상의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TYPE의 단위세대도 발코니 세대 간 조건 및 발코니 변화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사업계획변경승인 기준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면적 산정 시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초과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2006.1.23) 」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하였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형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공사 제외 품목입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본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등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에어컨, 기계환기장치, 욕실환기휀, 환기유니트,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입상관 포함)의 제품사양, 규격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그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구의 크기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내 환기성능을 고려하여 위치 및 개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공사 시 타일 및 인조대리석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벽체 마감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공간이 협소하거나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전기기 등 설치 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과 같으며 그 보다 큰 가전 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될 수 없습니다.
· 본공사 시 각종 창호의 디테일(프레임, 레일,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은 안방, 침실 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 될 수 있음.(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본공사 커텐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경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고, 일부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품목(가구, 가전 등)은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일부 구간에 난간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은 바닥 단차설계가 되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됩니다.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확장세대의 발코니 중 외기에 면하는 일부 벽체는 결로방지용 얇은 단열재가 설치되어 실제 발코니 사용 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며 벽면 및 천장에 단열 설치로 인한 단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 사양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주방 발코니(해당 주택형에 한함)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및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천정은 천정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각 평형별 유, 무상옵션 항목 및 확장공사 포함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실별 발코니 비확장형 및 확장형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비확장형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의 폭, 깊이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실제 시공 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됩니다.
· 각 세대(비확장형 세대 포함)의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공사 시 코킹 시공 부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욕실 천정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가구(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파우더장, 주방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 공용)은 본 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 FAN이 설치됩니다.
· 욕실 내 위생기구, 수전 및 액세서리의 위치는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천정형 환기설비가 적용되며 세대 내 디퓨저 위치는 본 시공 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보조주방 천정 부위에 세대 내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 환기장비가 설치되며, 천정틀 설치 시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장비 가동 시 작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 천장에는 환기용 장비, 덕트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발코니 천장 높이가 견본주택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 보안용으로 본 공사 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임의로 전유세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하여 하자 또는 성능불량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본공사 시 각종 도어 및 창호류의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손잡이,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열림방향 등), 난간의 사양(디자인, 크기, 색상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월패드,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이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갯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열재 시공은 미리 나누기도를 작성한 다음 절단기를 사용하여 일직선이 되게 절단하고 서로 만나는 부위는 틈새가 없도록 시공합니다.
· 주방에 가스배관, 렌지후드 환기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공자에서 지정한 일부세대는 공사기간 중 샘플세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세대 내의 각 발코니 공간별로 확장유무를 선택할 수 없으며 주택형별로 확장면적이 다름을 확인합니다.
· 실외기실 도어 및 손잡이는 본 공사 시 사양과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본 냉매배관 2개소(거실, 침실1)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 면적변경, 구조변경 또는 관련법령 저촉사항 등이 아닌 세대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시공 시 단위세대 내부에 결로방지를 위하여 일부 천장 및 벽체에 단열재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 마주보는 미러형 타입의 경우 전기기기(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등)의 위치가 간섭에 의하여 세대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사공으로 인해 구간 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평면선택형 사항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이 가능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및 욕실의 환기시설은 AD를 통한 배기시설이 아닌, 세대별 당해층 직배기로 계획되어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용 자동식 소화기 설치로 인하여 주방가구 상부장 일부공간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발코니 및 다용도실에 바닥배수구 및 입상배관, 가스계량기(가스배관은 노출)가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 가스 인입배관 및 가스미터기가 설치되며, 이에 따라 선반의 위치 및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외기 가동으로 인해 발생된 결로가 바닥에 고일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는 세대 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본 시공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마감사양(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천정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 발코니 또는 다용도실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장비와 덕트가 노출시공 될 수 있으며 마감천정의 높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의 위치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화재 시 피난 공간(관련규정에 근거)은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발코니 또는 보일러실의 경우 스프링클러 배관 및 덕트가 노출되거나 천정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주방씽크장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씽크장 하부의 사용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연결된 온수배관은 보온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천정내부에 유지보수를 위한 상부세대용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침실, 욕실 도어에 관련 법령에 의거 손끼임방지 장치가 설치됩니다.
· 74, 84타입의 경우 발코니 확장 시 대형 아트월타일(600*1200)이 설치되며, 비확장 시 400*800 타일로 시공됩니다.
· 주방발코니 창호 쪽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직렬 배치 시 창호개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전시용이며,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조명기구 위치변경은 불가하며 계약 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중문, 침실/드레스룸 슬라이딩도어는 장식성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니며 타입 별 평면에 따라 개폐방식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에 적용된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 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적용되는 주방가구 상하부장 제조사는 본 공사시 동등 이상의 이태리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 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가구마감재와 이색이 질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확장 시 선택 가능한 옵션 중 하나로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의 선택 시 견본주택 건립세대와 우물천정, 주방가구, 침실 붙박이장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 카달로그 및 안내문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 본 아파트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관청인 경상남도 김해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거나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의거 어린이집 관리비는 향후 김해시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원장)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되며, 개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의 단지 내 출입 및 임시주차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홍보물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 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에 사용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컷, 단위세대는 2020년 4월 24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도면에 의거하여 시공 됨.
· 각종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람.
· 각종 홍보물은 광고 . 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구역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및 공급계약서를 확인하시고, 견본주택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람.
· 각종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람.
· 각종 광고 . 홍보물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광장, 공원, 녹지 등) 조성계획은 사업주체, 김해시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 상의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우선함.

• 인허가

· 본 아파트는 현장여건, 구조, 성능, 상품 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건축법」,「주택법」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명칭, 동 . 호수의 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문주, 동 출입구, 외부난간 형태 . 높이 및 단지 조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 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의 외관 디자인(입면, 벽체 마감 등) 및 외부 색채(형태, 패턴, 재질 등), 간판 위치, 조경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조경공간 등은 실제 시공 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여건 등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 타공용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기계 . 전기실 등은 실제 시공 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관리사무소, 경로당,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기계/전기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제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 (색채, 재질, 간판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시설 포함)의 구성 및 실 배치 형태, 내부 구조 등 건축계획과 마감재 및 집기는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용승인 시 공동주택 이름의 우리말 표기운동에 따라 아파트 명칭을 고유지명이나 지역특성의 우리말 이름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유의사항

※ 모든 부동산 계약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함.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시공사와 무관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11 기타

· 당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및 본 단지의 명칭은 추후 사업주체의 요청에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대상의 약식표기는 청약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시한 참고용이며, 청약신청 시에는 반드시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아파트 지하 피트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VAT별도)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 통신감리
회사명	(주)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	(주)하림기술단	대원포비스(주)

감리금액	3,321,445,000	676,384,545	530,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동 등으로 인해 증가 될 수 있습니다.

■ 분양보증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분양보증 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312,260,200,000원	제01282020-101-0006200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주요내용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 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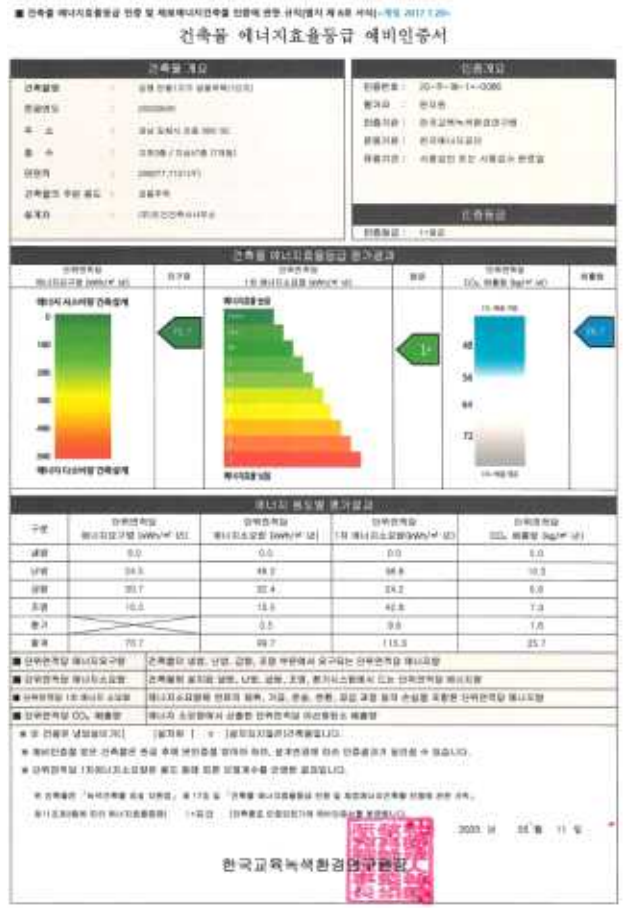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진행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에 의거,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 인증서
		

· 의무사항 적용유무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위탁자	시행수탁자	시공사
상호	(주)성은개발	대한토지신탁(주)	㈜대우건설
법인등록	180111-0884080	110111-1492513	110111-2137895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627번길 15 (안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삼성동, 아셈타워26층)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 관리형토지신탁 관련 사항

1. 「본 사업은 위탁자 ㈜성은개발, 시공사 ㈜대우건설, 수탁자 대한토지신탁(주)이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실질적 사업주체인 위탁자의 사업비 조달, 시공사의 책임준공, 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를 통해 진행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입니다.」
2. 「공급계약상 공급금액(분양대금) 납부는 '대한토지신탁㈜'명의로 개설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만 입금가능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 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급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3. 「본건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수탁자는 공급 대상 목적물인 신탁재산을 보전하고, 준공 후 공급금액 완납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수탁자가 공급계약상 공급자로서 부담하는 모든 의무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 범위로 그 책임이 한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탁자가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4. 「본건 공급계약상 공급 대상 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사용검사 전 하자 포함)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공사가 부담하며, 매수인은 수탁자에게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신탁해지,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즉시 모든 공급계약에 대하여, 개별 공급계약에 따라 공급 대상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그 즉시 해당 공급계약에 대하여, 공급자이자 매도인으로서 대한토지신탁(주)이 가지는 일체의 권리·의무(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승계)됩니다.」
6.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의 상환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7. 「본건 공급 대상 목적물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공급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매수인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매수인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관련 법령상 그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상·안전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위치 : 김해시 안동 360-32

• 분양문의 : ☎ 1899-9053

• 분양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 https://www.prugio.com/house/2020/gimhae/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